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0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박형수 · 이성권 · 조배숙
김형동 · 강민국 · 구자근
서지영 · 백종현 · 이달희
김대식 · 고동진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그 밖의 자연적”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 및 그 밖의 지리적·자연적”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긴급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 <u><신 설></u></p>	<p>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 ----- ----- -----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의 결과 및 그 밖의 <u>지리적·자연적</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제40조의2(긴급지원) ①</u>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u></p>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